법령 38-04

과테말라 국회는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과테말라 정부는 국가 해외 무역의 효율적이고 정리된 발전과 진흥을 보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내 및 외국 자본의 투자를 보장하게하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국제 시장에서 국내 생산 분야의 국가 생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이 존재한다.

이 분야 회사들의 국제 시장에 대한 효율적 접근과 경쟁력을 제한하는 내부 요소들이 존재하는 데 이 요소들은 높은 전기세, 최저 임금 인상, 수출업체 에 대한 세금 상환 수속의 지연과 법률의 잦은 변경을 들 수 있다.

국내 현행 수출 진흥 법규들을 보면 이웃 나라들의 관련 법이 훨씬 진보되어 있으므로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에 있어 과테말라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국내 여러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명확한 법규 제정을 허용하는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테말라 공화국 헌법 171조 a)항과 118조,119조가 부여하는 직권으로 법령으로 공포한다.

과테말라 국회 법령 29-89 개정 "수출 및 마낄라 활동 발전 및 진흥법"

1조. 1조 개정

"1조. 이 법은 과테말라에 있는 회사가 외국에 거주하는 계약자에게 합의된 조건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장려하며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완전 변형 또는 국내자재 면세 제도 내에서 마낄라 업체의 활동과 수출업체 활동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2조. 3조의 a),g)항을 개정하고 j),I)항을 추가 (정의):

a)완전 가공 제도 가공 작업에 투입하여 완제품의 형태로 수출을 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자재를 관세 또는 수입세 부과하지 않고 국내 세관 지역으로의 유입을 허용하는 제도.

- g) 간접 수출 업체. 이는 경제 활동 내에서 이 법의 수혜 자격을 가진 업체에게 수출을 위한 상품에 쓰이는 상품, 원자재, 반제품, 부자재, 용기 또는 포장재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 j) 재수출 : 수입된 상품이 가공되지 않고 수출되는 것.
- I) 공동 수출. 과테말라 법령 29-89 수혜 자격을 가진 두 회사간의 공급 촉진을 위해 생산 체인을 창출하는 행위.

3조. 3조에 둘째 단락 추가

"3조 bis. 부패하는 식물 재료의 수입을 위해서, 관련 당국은 선적 도착 또는 서류 제출 후다음 6시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승인하여야 하며 세관 구역에서의 적출 이후에도 통제 제정이 가능하다. 이 법안 수혜 업체는 현행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조. 7조 개정

"7조. 관세 유예 제도하의 마낄라 활동은 재수출될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항상 이 자재의 체류는 보증, 재무부에서 승인한 특정 보증, 은행보증 또는 보세 창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되고 이러한 종류의 활동을 위한 특정 보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창고를 통해 임시적으로 허용된 것임을 재무부에서 보증 되어야 한다.

5조. 8조 개정

"8조. 관세 유예 제도하의 수출 활동은 수출 또는 재수출될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항상 이 자재의 체류는 보증, SAT에서 승인한 특정 보증, 은행 보증 또는 보세 창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되고 이러한 종류의 활동을 위한 특정보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창고를 통해 임시적으로 허용된 것임을 재무부에 의해 보증 되어야 한다."

6조. 9조 개정

"9조. 관세 환급 제도하의 수출 활동은 수출 또는 재수출될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항상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자재의 임시 체류를 재무부가 보증하다."

7조. 10조 개정

"10조. 관세 면제 복구 제도하의 수출 활동은 수출업체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품 생산으로 이해되고 이 상품은 수출 업체가 수출한 상품에 복합,혼합, 첨가한 것이다."

8조. 11조 개정

"11조. 국내 자재 면세 제도하의 수출활동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조립한 상품에 사용된 자재가 전부 국내산 또는 국내화 된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9조. 12조의 c)항 개정, g)항 추가

- c)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상품의 수출과 수출된 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적용된다. 이 면제는 경제부에서 이 법안 혜택 자격 판결 통보한 날부터 10년간 허용됨.
- 이 면제 적용을 위해서 수혜자는 수출된 것과 자재 관련 비용이 따로 분리된 비용 및 재고회계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과테말라에 지사,대리점,영구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수출 활동을 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마낄라의 경우 과테말라에서 내는 소득세를 본국에서 상환해 주는 경우 이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g) 전력발전에 필요한 퓨엘 오일, 부탄 가스, 프로판 가스, 벙커의 수입과 소비에 대한 세금, 관세, 기타 적용 가능한 처분에 대한 면제.

10조. 13조 a)항 개정

"13조.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상품의 수출과 수출된 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이 면제는 경제부에서 이 법안 혜택 자격 판결 통보한 날부터 10년간 허용됨.

이 면제 적용을 위해서 수혜 납자는 수출된 것과 자재 관련 비용이 따로 분리된 비용 및 재고 회계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과테말라에 지사,대리점,영구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수출 활동을 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마낄라의 경우 과테말라에서 내는 소득세를 본국에서 상환해 주는 경우 이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11조. 14조 개정

"14조. 관세 면제 복구 제도에 따라 이 법의 수혜 자격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소유의 회사가 관세, 수입세, IVA를 지급한 원자재를 제3자가 수출한 상품 제조에 사용하였을 경우지급한 관세, 수입세, IVA와 같은 액수의 면제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 면제는 생산과 직접관련되는 원자재, 반제품, 중간재, 재료, 용기, 포장재, 라벨의 장래 수입 시에 사용될 것이다."

12조. 15조 b)항 개정, d)항 추가

- b)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상품의 수출과 수출된 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이 면제는 경제부에서 이 법안 혜택 자격 판결 통보한 날부터 10년간 허용됨.
- 이 면제 적용을 위해서 수혜 납자는 수출된 것과 자재 관련 비용이 따로 분리된 비용 및 재고 회계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과테말라에 지사,대리점,영구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수출 활동을 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마낄라의 경우 과테말라에서 내는 소득세를 본국에서 상환해 주는 경우 이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d) 생산 현장 내의 전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퓨엘 오일, 부탄 가스, 프로판 가스, 벙커의 수입과 소비에 대한 세금, 관세, 기타 적용 가능한 처분에 대한 면제.

13조. 16조 개정

"16조. 관세 유예 제도 수혜 회사는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업체이든 아니든 생산 서비스 하청 계약을 할 수 있다. 사전에 이를 경제부의 산업정책국에 통보를 하면 산업정책국이 이를 SAT에 통보할 것이다. 이 통보는 담당 기관이 제공하는 지시서에서 정한 정보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4조. 17조 개정

"17조. 관세 유예 제도와 국내 자재 면세 제도 수혜 회사는 경제부의 산업정책국에 사전 통보 후 타 회사에 상품 수출 또는 재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 재료, 용기, 포장재, 라벨과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부속, 재료, 액세서리를 이전할 수 있는 데 항상 취득자가 양도인과 같거나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하며 이전된 자산이 회사의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됨을 증명해야 함. 산업정책국이 이를 SAT에 통보할 것임."

15조. 17조에 둘째 단락 추가 (노동 허가서)

"17조. 이 법안 수혜 회사는 외국인 기술자의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부는 이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자동적으로 노동 허가를 주며 이 기간 동안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

16조. 20조 개정

"20조. 이 법의 수혜 자격을 받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당사자는 경제부의 산업정책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관이 제공하는 지시서에서 정한 요건과 정보를 충족시키고 회사의 소유주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서명한 경제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소득세 면제 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관세, IVA, 기타 적용 가능한 세금의 유예를 누리는 관세 유예 제도를 계속 적용하기 위해 관세율 코드 확장을 할 때 납세자는 위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자재, 반제품, 중간재, 재료, 용기, 포장재, 라벨과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 부속, 부품, 액세서리의 수입 승인을 신청한다."

17조. 29조 개정

"29조. 앞 조항에서 규정된 내용(사후 관리)을 유효화 하기 위해 당사자는 수출 신고서, 재수출 신고서 또는 중미 세관 신고서(FAUCA) 제출일 이후 45일 이내에 담당 사무소를 통해 SAT에 이 사후 관리를 신청해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이 신청서가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SAT에 지연된 수출 면장 또는 재수출 면장 또는 중미세관신고서 당 벌금 US\$100.00을 당일 환율에 따른 께찰로 환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납부하면 이 사후 관리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18조. 33조 b)항 개정

b) 매월 20일 이내에 월별 수출입 신고서(Declaracion Jurada)를 SAT에 담당 사무소를 통

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 제도 관련 규정에서 명시된 대로 상품의 수출입 거래 내역(Cuenta Corriente)이 나타나야 한다.

이 수출입 신고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 메일로 보낼 수 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IVA는 면제되지 않고 상환될 가능성이 거의 100% 임.

19조. 새 조항. 36조에 둘째 단락 추가

"36조 bis. 국회법 29-89 수혜 회사, 국내 세관 영토 내에서 운영하는 회사, 관세 유예 제도와 완전 가공 제도 하에 운영되는 회사, 자유무역지대 사용자들은 그들 간에 가공,제도 또는 수출, 재수출을 위한 상품을 보완하는 데에 투입하기 위한 상품을 보내거나 받을 수있다.

이 적용은 IVA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적용에 속하는 상품은 국내 반입 또는 반출에 관하여 현 세관법에 제정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자유 무역 지대 사용자가 완전 가공 제도 수혜 회사, 관세 유예 제도 수혜 회사, 국내 세관 영토 내에 있는 회사에 상품을 보낼 경우 수입 관세, IVA, 기타 적용 가능한 세금은 SAT에서 승인된 보증을 설정하여 보증해야 하며 보증 설정은 이 법령 또는 법령 65-89에 의해가지고 있는 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20조. 새 조항. 36조 셋째 단락 추가

"33조 ter. 관세 유예 제도 하에 유입된 상품을 조립 또는 가공 제도의 수혜자간에 완전 가공을 위해 이전할 수 있으며 발송 회사와 수령 회사는 수출 신고서에 앞서 말한 상품의 공동 수출인으로 명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완성품에 병합되는 국내산 자재 매입도 할 수 있으며 국내 생산 회사도 공동 수출인으로 명시할 수 있다.국내 자재 매입은 IVA 납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1조. 40조 개정

"40조. 이 법안 혜택 하에 수입된 기계,장비,부속, 부품, 액세서리는 양도될 수 없고 사용 승인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다만 해당 관세, 수입세, IVA를 지급하였 거나 수입된 기계, 장비, 부속, 부품, 액세서리의 수입 면장 승인일자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이다. 산업정책국에 사전 통보 하면 산업정책국이 SAT에 통보할 것이다."

22조. 잠정 법률. 이 법령 발효 후 90일 동안 국회법 29-89의 수혜 회사들은 29-89법의 20조에 언급된 벌금을 물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미 이 건이 법원에 제출되어 관련 관세와 세금 납부를 법적으로 청구 받은 회사의 경우는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회사들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3조. 발효. 국회 의원 총 수의 2/3 이상이 찬성을 하여 이 법령은 국가 긴급 사항으로 선언되었으며 1차 토의에서 비준하였고 관보에 공포 후 8일 뒤에 발효된다.

이의 비준, 공포, 발표를 위해 행정부에 인계하십시오. 2004년 11월 25일 과테말라 시티 사법부에서 작성됨.